

서울특별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준오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273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9월 08일

발 의 자: 서준오, 김성준, 김영철,
김인제, 이병도, 이용균,
이원형, 임만균, 임종국,
한 신, 황철규 의원(11
명)

1. 제안이유

-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문화·복지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 (안 제1조 ~ 제2조)
- 나. 지원사업의 종류 (안 제4조)
- 다.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라.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마. 표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참고사항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서울특별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문화·복지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재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를 말한다.
2.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기숙사 및 급식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시설 시설유지보수비 지원 사업
2. 학교시설의 관리인력 지원 사업

3. 학교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사업

4. 그 밖에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5조(안전조치) 시장은 학교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협조요청)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받는 학교시설에 대하여 학교 교육 및 안전상 지장이 없고 학교재산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표창) 시장은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학교,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 서 번 호

2023082800000002

비 용 추 계 서

요 청 인 : 서준오 의원

담 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박지영 주무관

접 수 일 : 2023.08.28.

회 신 일 : 2023.09.06.

내용문의 : 02-2180-7952

서울특별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목 차

I. 비용추계 요약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지원사업), 제5조(안전조치), 제7조(표창)를 규정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
- ※ 같은 조례안 제5조(안전조치) 관련, 보험료는 각 학교당 개방시간, 개방시설의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술적 추계가 곤란하며 같은 조례안 제7조(표창)에 따른 표창장 제작비는 각급학교 운영비에 포함하여 집행 가능하므로 추계에서 제외함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제4조(지원사업)

나. 전제

- 개방을 할 수 있는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교(22년도 조사 기준 1,347개교)는 모두 개방을 한다고 전제
- 같은 조례안 제8조(지원사업) 제1항 제1호(학교시설유지보수비 지원)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경비지원)는 2022년도 개방 실적 조사 기준 서울시 소재 개방 가능한 초·중·고교(1,347개교)에서 ‘2023년 학교체육시설 개방 인센티브 지원계획’ (교육재정과/2023.9.5.)에 따라 지원을 받는 354개교를 제외한 993개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전제

개방 가능한 초·중·고학교	학교시설개방 우수 지원금 대상학교 (연 1)개방시간 100시간 이상)	개방하지 않거나 2)단순 개방하거나 연 개방시간 100시간 이하인 학교
1,347개교	354개교	993개교

※ 2023년 학교체육시설개방 인센티브 사업은 2022년 학교체육시설 개방 실적에 따라 집행하며 개방 시간은 사용 허가를 기준으로 함

1) 사전에 사용 허가를 한 경우에만 개방 시간으로 인정함

2) 사용 허가를 하지 않은 개방(예: 교문 개방으로 학교 트랙을 산책로로 사용 등)

- 각 학교당 시설유지보수 및 경비 지원금액은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상 시설유지보수 지원금액인 10,000천원과 같다고 전제
- 같은 조례안 제8조(지원사업)제1항제2호 관련 학교시설 관리인력은 2022년도 기준 개방 가능한 초·중·고교(1,347개교)를 대상으로 각 1명씩, 2023년 서울형 생활 임금 시급단가, 1일 3시간, 월 20일, 12개월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전제
 - ※ 학교시설개방 우수학교 운영비 지원사업은 관리인력 비용에 대한 지원은 없으므로 관리인력 관련 비용은 개방 가능한 전체 학교(1,347개교)에 대하여 추계하며 학교당 근로자수, 1일 근무시간, 월 근무 일수는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를 참조
- 비용은 2024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4~2028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임금 및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5년(2024년~2028년)

라. 방법

- 교육재정과 ‘2023년(2022학년도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인센티브 지원계획’ ,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를 근거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103,752,525천원(연평균 20,750,505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시설유지보수 및 경비지원 (안 제4조제1항제1호,제3호)	9,930,000	9,930,000	9,930,000	9,930,000	9,930,000	49,650,000
	관리인력 지원 (안 제4조제1항제2호)	10,820,505	10,820,505	10,820,505	10,820,505	10,820,505	54,102,525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소계(b)	20,750,505	20,750,505	20,750,505	20,750,505	20,750,505	103,752,525
□ 총 비용(b-a)		20,750,505	20,750,505	20,750,505	20,750,505	20,750,505	103,752,525

4. 덧붙이는 의견

- 본 추계는 22년도 조사 기준 개방을 할 수 있는 대상 학교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므로 매년 휴·폐교 상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또한 같은 조례안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관련, 사용허가 및 징수료를 받지 않는 단순 개방(예를 들면 저녁시간 산책로로서의 학교 운동장 트랙 개방 등)에 대하여 예산 지원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시설유지보수 및 경비지원 단가(10,000천원)는 타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조정되어야 할 것임

※ 타지자체 지원사례 : 부산광역시 10,000천원, 구리시 7,000천원, 하남시 2,000천원

(〈붙임5〉 경기도 교육청 학교시설 개방지원 업무협약 체결현황 참조)

- 관리인력 비용은 각 학교별 평균 개방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박지영

☎ 02-2180-7952

e-mail : 7magic7@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같은 조례안 제8조(지원사업) 제1항 제1호(학교시설유지보수비 지원)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경비지원)에 따라 시설유지보수 및 경비 비용 발생
- 같은 조례안 제8조(지원사업)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리인력 인건비 발생

2. 세부추계내역

가. 총비용 ≒ 103,752,525천원(연평균 20,750,505천원)

나. 학교시설유지보수비·경비 ≒ 49,650,000천원

$$\begin{aligned} \text{산출방식} &= \sum_{i=1}^5 (\text{학교시설유지보수비} \cdot \text{경비})_i \quad ※ \quad i : \text{비용추계 연차}(2024\text{년} \sim 2028\text{년}) \\ &= \text{지원비 단가} \times \text{대상학교} \times 5\text{년} \\ &= 10,000\text{천원} \times 993 \times 5 \\ &= 49,650,000\text{천원} \end{aligned}$$

※ 지원비 단가: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상 시설유지보수 지원금
(〈붙임4〉 부산광역시 비용추계서 참조)

※ 대상학교: 22년 기준 개방 가능 학교(1,347개교)-23년도 인센티브 지원학교(354개교)=993개교
(〈붙임 3〉 2023년 학교체육시설 개방 인센티브 지원계획 참조)

다. 관리인력 인건비 ≒ 54,102,525천원

$$\begin{aligned} \text{산출방식} &= \sum_{i=1}^5 (\text{관리인력 인건비})_i \quad ※ \quad i : \text{비용추계 연차}(2024\text{년} \sim 2028\text{년}) \\ &= 23\text{년 서울형 생활임금} \times 1\text{일 근로시간} \times \text{월 근무일수} \times \text{학교당 근로인력} \times \text{대상학교} \times 5\text{년} \\ &= 11,157\text{원} \times 3\text{시간} \times 20\text{일} \times 12\text{개월} \times 1\text{명} \times 1,347\text{개교} \times 5\text{년} \\ &= 54,102,525\text{천원} \end{aligned}$$

※ 대상학교: 학교시설개방 우수학교 지원사업에는 관리인력 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22년 기준 전체 개방 대상학교(1,347교)로 계상

※ 시급단가: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으로 고정 계상

(임금상승률(물가상승률) 미반영, 참고자료로 〈붙임2〉최근 5년간 서울형 생활임금 현황 붙임)

※ 1일 근로시간, 월 근무일수, 학교당 배치인원: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참고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시설유지보수 및 경비지원 (안 제4조제1항제1호제3호)	9,930,000	9,930,000	9,930,000	9,930,000	9,930,000	49,650,000
관리인력 지원 (안 제4조제1항제2호)	10,820,505	10,820,505	10,820,505	10,820,505	10,820,505	54,102,525
합 계	20,750,505	20,750,505	20,750,505	20,750,505	20,750,505	103,752,525

주 : 임금 및 물가상승률 미반영

[붙임1] 관련 사업 예산 세부 내역

☐ 학교시설개방우수학교 운영비 지원

- 대상 : 공·사립 초·중·고등학교(각종 특수학교 포함)
- 내용 : 지역주민의 생활 체육을 위해 학교 체육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중 2022학년도 개방 실적이 우수한 학교를 선정하여 인센티브 지원
- 방법 : 연 개방 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학교 대상 실적별 차등 지급
- 소요예산 : 8,360,000천원

· 학교회계전출금	8,360,000	천원
- (공립)학교운영비	7,020,000천원 × 1식 =	7,020,000 천원
- (사립)학교운영비	1,340,000천원 × 1식 =	1,340,000 천원

자료 : 2023년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예산서

[붙임2] 최근 5년간 서울형 생활임금 상승률

☐ 최근 5년간 서울형 생활임금 현황

구 분	서울형 생활임금	상승률
2019년	9,211원	10.2%
2020년	10,148원	3.7%
2021년	10,523원	1.7%
2022년	10,766원	0.6%
2023년	11,157원	3.6%

[붙임3] : 21년도 학교시설 개방실적에 따른 22년도 인센티브 사업계획서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서울청정맑음!
서울교육 밝음!

2023년(2022학년도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인센티브 지원 계획(안)

2023. 9.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

2023년(2022학년도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인센티브 지원 계획(안)

추진방향

- ◆ 체육시설 개방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으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도모
 - 지원 기준 상향(50시간→100시간)으로 인센티브 지원의 실효성 확보
- ◆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로 마을과 상생하는 학교 구현

I 개요

□ 목적

- (학교 재정 부담 완화)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시설물 노후 가속화로 증가되는 학교의 시설보수비 등 재정 부담 완화
- (안정적인 학교시설 개방 환경 조성)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으로 안정적인 학교시설 개방 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 2022학년도 학교 체육시설 사용허가 실적 및 2023학년도 개방 현황 보고(교육재정과-11530, 2023. 5. 16.)

□ 사업 추진 경과

- (2017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인센티브 지원 사업 시작
- (2021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인센티브 지원 대상 확대(공립→공·사립)
- (2022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인센티브 지원 방식 변경
 - ①지원구간 축소, ②평균 지원금액 상향, ③목적사업비 교부
-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제정(5월)
- (2023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인센티브 추가경정예산 확정(7월)

II

학교 체육시설 개방 현황(2022학년도) 및 분석

□ 조사 개요

- (대상) 공·사립 초·중·고·특수·각종학교 **1,347교**(공립 976교*, 사립 371교)
* 제외: 휴교 1교(개포중), 폐교 1교(화양초), 공동학교 3교(강빛초, 해누리초, 서울체육중)
- (내용) 2022학년도 학교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사용허가 실적**

□ 조사 결과

- 체육시설 사용허가 현황(지역주민 생활체육 목적)

(단위: 건, 시간, 백만원)

구 분		학교 수	허가 건수	허가 시간	사용료
운동장	공 립	281	852	55,149	556
	사 립	67	197	20,376	485
	소 계	348	1,049	75,525	1,042
체육관 (다목적강당)	공 립	191	530	90,697	874
	사 립	25	43	6,941	93
	소 계	216	573	97,638	967
합 계		454 ³⁾	1,622	173,163	2,009

- 전년도 대비 사용허가 실적 비교(지역주민 생활체육 목적)

(단위: 건, 시간, 백만원)

구 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운동장	학교 수	256	123	348
	허가 건수	656	396	1,049
	허가 시간	30,751	20,142	75,525
	사용료	441	335	1,042
체육관 (다목적강당)	학교 수	56	42	216
	허가 건수	119	90	573
	허가 시간	15,597	16,764	97,638
	사용료	167	157	967
합 계	학교 수	279	143	454
	허가 건수	775	486	1,622
	허가 시간	46,348	36,906	173,163
	사용료	608	492	2,009

3) 학교 수 합계: 운동장과 체육관을 모두 사용허가한 중복 학교 제외(이하 동일)

□ 분석 결과

- 2020년 1월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및 같은 해 3월 세계 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 선언에 따라 2년 연속(2020~2021학년도)으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실적에 감소하였으나, 2022학년도에는 개방 실적 증가
- 특히 체육관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가세가 더 뚜렷하게 나타남
 - ※ 운동장의 경우 전년 대비 사용허가 학교 수는 2.83배(123교→348교), 허가 건수는 2.65배(396건→1,049건) 증가하였으나, 체육관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사용허가 학교 수는 5.14배(42교→216교), 허가 건수는 6.37배(90건→573건) 증가
- 이는 2022년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같은 해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 2023년 1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등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책과 함께 각 시기에 맞춘 교육청의 적극적인 학교시설 개방 기준 안내 및 협조 요청에 따른 결과로 판단

◆ 참고: 정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책 및 교육청 학교시설 개방 안내

구 분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책	교육청 학교시설 개방 안내
2022년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른 학교시설 개방 기준 안내(교육재정과-8301, 2022. 4. 18.)
2022년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9/26)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에 따른 학교시설 개방 기준 안내(교육재정과-19874, 2022. 9. 23.)
2022년 10월	-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에 따른 학교시설 개방 적극 협조 요청(교육재정과-22335, 2022. 10. 21.)
2023년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1/30)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시설 개방 적극 협조 요청(교육재정과-2071, 2023. 1. 31.)

III

인센티브 지원 계획

□ 기본 방향

- (지원 기준 상향) 연 100시간 이상 개방 학교 - **실효성 확보(시의회 지적사항)**
- (인센티브 확대 지속) 2022년에 확대한 인센티브 확대 기조^①지원구간 축소, ^②평균 지원금액 상향, ^③목적사업비 교부)를 지속 유지함으로써 '인센티브 지원 - 시설 개방' 선순환 체계 구축

- (지원 기준 상향) 개방 인센티브 지원의 실효성 확보(시의회 지적사항)를 위하여 지원 기준을 기존 연 50시간에서 연 100시간으로 상향
 ※ 연 100시간 미만 개방은 주당 평균 2시간 미만(1년 52주) 개방으로, 사실상 미개방으로 간주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인센티브 확대) ^①지원구간 축소(7구간→5구간), ^②평균 지원금액 상향(1,600만원→2,000만원), ^③교부 방식 변경(학교운영비→목적사업비) 등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유지하여 학교의 인센티브 체감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인센티브 지원 - 시설 개방' 선순환 체계 구축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지원 구간	7구간	7구간	7구간	5구간	5구간
지원 기준	50시간 이상	50시간 이상	50시간 이상	50시간 이상	100시간 이상
지원 학교 수	652교	640교	171교	191교	354교
교당 평균 지원금액	13,803천원	14,062천원	16,000천원	20,580천원	20,652천원
교부 방식	학교운영비	학교운영비	학교운영비	목적사업비	목적사업비

□ 세부 지원 계획

- (대상) 2022학년도 학교 체육시설 연 100시간 이상 개방⁴⁾ 학교 **354교***
 * 공립 291교(초 148, 중 98, 고 43, 각종 2), 사립 63교(초 2, 중 10, 고 51)

4) 지역주민 생활체육 목적 사용허가 기준

- (지원금액) 각 구간별 정액 적용하여 교당 평균 2천만원* 교부

* 3구간 지원금액을 20,000천원으로 설정 후 1~3구간 학교는 6,000천원, 3~5구간 학교는 2,600천원 간격으로 지원금액 결정

(단위: 천원)

구 분	개방 시간	학교 수 (A)	학교별 지원금액 (B)	지원금액 총계 (C=A×B)
1구간	801시간 이상	58	32,000	1,856,000
2구간	601시간 이상 800시간 이하	46	26,000	1,196,000
3구간	401시간 이상 600시간 이하	54	20,000	1,080,000
4구간	201시간 이상 400시간 이하	107	17,400	1,861,800
5구간	100시간 이상 200시간 이하	89	14,800	1,317,200
총 계		354		7,311,000

IV 예산 편성 · 집행 방법

☐ 예산 편성 방법

- ①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및 시설사업비, ②개방 활성화 및 담당자 사기 진작 등을 위한 교직원 연수·복지비, ③학교시설 개방 담당 부서 운영경비 등 항목으로 학교 수요에 따라 자율 편성하되, 시설장비유지비 및 시설사업비는 전체 인센티브의 50% 이상 편성(전년과 동일)

※ 업무추진비는 전체 인센티브의 5% 이내에서 편성

☐ 예산 집행 방법

- (원칙) 인센티브는 2023학년도 내(2024년 2월까지) 집행 완료
 - 시설장비유지비 및 시설사업비의 경우 운동장 및 체육관 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우선 사용하되, 학교 사정에 따라 기타 시설장비 유지비 및 시설사업비로 사용 가능

- (예외) 불가피한 시설장비유지비 및 시설사업비의 경우 이월 가능
 - 이월 가능 금액 범위: 시설장비유지비 및 시설사업비로 편성한 금액 중 불가피한 사유로 2023학년도 내 집행이 어려운 경우 명시·사고이월 가능

V

향후 계획

- 학교 체육시설 개방 인센티브 교부 : '23년 9월 1~2주
- 학교별 집행 실적·결과 제출 : '24년 1월 4주~2월 1주

참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 인센티브 집행 기준 1부. 끝.

참 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 인센티브 편성 · 집행 기준

□ 편성 방향

- ①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및 시설사업비, ②개방 활성화 및 담당자 사기 진작 등을 위한 교직원 연수·복지비, ③학교시설 개방 담당 부서 운영경비 등 항목으로 학교 수요에 따라 자율 편성하되, 시설장비유지비 및 시설사업비는 전체 인센티브의 **50% 이상 편성**(전년과 동일)

□ 집행 항목

1.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및 시설사업비 - 50% 이상 편성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세부사업 '학교시설장비유지' 및 '시설확충및개선' 해당 사업 (예시) 학교 공공요금, 소규모시설보수비, 운동장 및 체육관 보수공사 등

- 학교시설장비유지: 학교 시설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시설유지 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용역비 등)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연료비, 시설관리용역, 시설 일반관리, 화장실관리, 체육관관리, 당직관리, 소규모시설보수, 당직원인건비, 미화원인건비 등)
- 시설확충및개선: 학교시설 확충, 노후시설 개선, 호우피해 복구, 교실 증·개축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교실증개축, 조경공사, 교사동 방수공사, 인조잔디운동장 보수 등)

2.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및 담당자 사기 진작 등을 위한 교직원 연수·복지비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세부사업 '교직원역량강화' 및 '교직원복지' 해당 사업 (예시) 타 기관 우수 개방 사례 탐방 연수비 및 교직원 문화활동비 등

- 교직원역량강화: 학교 전체 교직원의 교수 및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 사업비 (★직무연수, 자격연수, 정보화연수, 자율연수, 학습동아리운영, 기타 역량강화 지원 등)
- 교직원복지: 학교 전체 교직원의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비 (★동호회지원, 교직원체육행사, 교직원문화행사 등)

3. 학교시설 개방 담당 부서 운영경비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세부사업 '부서기본운영' 해당 사업 (예시) 학교시설 개방 담당 부서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비 및 수용비 등

- 부서기본운영: 학교 각 부서의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부서운영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 사무용기기 구입 및 수리, 업무추진비 등)
(★교장실운영, 행정실운영 등)

업무추진비 편성 한도									
1구간	1,600천원	2구간	1,300천원	3구간	1,000천원	4구간	870천원	5구간	740천원

[붙임4] :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안 제4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시설유지보수비 및 안전관리인력 인건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세출	시설유지보수비 등	960,000	960,000	1,440,000	1,440,000	1,440,000	6,240,000
	인건비	2,342,131	2,787,160	3,248,916	3,728,125	3,802,775	15,909,107
	소계	3,302,131	3,747,160	4,688,916	5,168,125	5,242,775	22,149,107
세입			해 당	사 항	없 음		
총 비용		3,302,131	3,747,160	4,688,916	5,168,125	5,242,775	22,149,107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초·중·고 학교 수 : 617개교

- 학교시설 개방 학교 수* : 480개교

* 코로나이전 학교시설 개방비율 78%로 계상

- 시설유지보수비 지원 최대 금액 : 10,000,000원

※ 타 지자체 지원 사례 : 경기도 구리시 7,000천원, 시흥시 3,000천원

- 인건비 : 부산형 생활임금 시급단가,

매년 전년대비 2% 인상액으로 산정

(교육청)2021년 학교시설 개방관련 설문조사

- 대 상 : 교육청소속 교직원 ○ 조사기간 : '21.10.20.~10.29.

- 조사방법 : 온라인 ○ 조사내용 : 시설개방 업무 개선 및 지원방안 등

- 조사결과

- (시설개방 업무 개선 방향) ① 안전대책 마련 33% ② 예산 및 인력지원 24.2%

- ③ 시설관리 책임 완화 19.2% ④ 업무 가이드라인 제작 및 컨설팅 제공 18.2%

연도	항목	예산액	산출근거
2024년	계	3,302,131	
	시설유지보수비	960,000	10,000,000원*(480개교*20%)
	인건비	2,342,131	11,295원*3시간*20일*12월*(480개교*60%)
2025년	계	3,747,160	
	시설유지보수비	960,000	10,000,000원*(480개교*20%)
	인건비	2,787,160	11,521원*3시간*20일*12월*(480개교*70%)
2026년	계	4,688,916	
	시설유지보수비	1,440,000	10,000,000원*(480개교*30%)
	인건비	3,248,916	11,751원*3시간*20일*12월*(480개교*80%)
2027년	계	5,168,125	
	시설유지보수비	1,440,000	10,000,000원*(480개교*30%)
	인건비	3,728,125	11,986원*3시간*20일*12월*(480개교*90%)
2028년	계	5,242,775	
	시설유지보수비	1,440,000	10,000,000원*(480개교*30%)
	인건비	3,802,775	12,226원*3시간*20일*12월*(480개교*90%)

5. 재원조달 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국비							
시비	일반회계	3,302,131	3,747,160	4,688,916	5,168,125	5,242,775	22,149,107
	○○특별회계						
	○○기금						
구·군비							
민간							
기타							
합계		3,302,131	3,747,160	4,688,916	5,168,125	5,242,775	22,149,107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매년 본예산 편성 계획

3) 협의사항 :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붙임5] : 경기도 교육청 학교시설 개방지원 업무협약 체결 현황

연번	지역명	참여교	주요내용	인센티브	비고
1	광명	47	• 학교별 개방시간 지정 • 체육관 운영비 및 시설유지보수비 지원 • 안전관리 및 사후 관리 공동대처, 실무 위원회 구성	- 개방일수에 따라 교당 연간 360만원~600만원 운영비 차등 지원	
2	부천	121	• 교육경비 지원 심의 시 개방학교 가점 반영 • 운영비 및 시설유지보수비 지원 • 주차장 개방 관련 시설 설치 지원 • 시설개방에 필요한 학교장 요구사항 지원	- 개방 참여 15교 300~400만원 지원	
3	고양	14	• 각종 환경개선사업 및 개방실적 우수교 지원금 신청 시 가점 반영 • 주차 개방 시설 및 보안시설 설치비 지원	- 개방시설 당 10,000천원(교육경비보조금) 지원 - 주차장 개방면당 30천원(보상금) 지원	
4	의정부	25	• 교육경비 지원 심의 시 개방학교 가점 반영 • 학교 개방시설 운영비 교당 연간 100만원 지원 • CCTV, 출입관리시스템 등 보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 교당 100만원 지원	
5	파주	9	• 개방시설 운영비 및 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 CCTV등 주차장 개방 관련 시설설치 지원 • 기타 시설 개방에 필요한 학교장 요구 사항 지원	- 교당 500만원 지원	만료
6	양평	40	• 시청에서는 개방교에 행·재정적 지원 • 학교장은 개방에 적극 협력 • 교육지원청은 시청과 협력 및 개방교 지원	- 교당 200만원 지원	
7	구리	11	• 참여교에 대한 운영 보조금 지원 •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 시 개방학교 가점 반영 • 보안시설 설치비 지원 • 민원사항 공동 대응	- 교당 700만원 지원 (11교)	
8	군포	3	• 학교 주차시설 개방 • 주차시설물 설치 및 시설 공사 지원 •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사고 처리 노력 • 출차관리 등 관제시스템 운영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 개방 참여교 주차시설물 설치 및 시설 공사 지원	
9	하남	13	• 시청에서는 개방교 행·재정적 지원 • 교육경비 지원 심의 시 개방학교 가점 반영 • 주차관제시스템/cctv 등 무상설치/인력배치 지원	- 교당 200만원 지원/주차시설물 설치 및 인력지원	
10	시흥	84	• 교육지원청은 시청, 체육회와 협력 및 개방교 지원 • 시청에서는 참여교 보조금 지원 • 체육회는 소속 동호회를 개방교와 1대1 매칭 • 학교장은 개방에 적극 협력	- 교당 개방시설별 운영비 차등 지원 (200~600만원)	

연번	지역명	참여교	주요내용	인센티브	비고
11	안산	24	- 주차관제시스템, CCTV 등 시설 및 관리인력 지원 - 교육경비 지원 심의시 개방학교 가점 반영 - 개방시설 유지보수비 교육경비 우선지원 - 시설개방에 필요한 학교장 요구사항	-(추가)2022.12.23. 협약 체결 이후 참여교 협의 중	
12	양주	4	- 교육지원청은 시청, 및 개방교 협약 체결독려를 통해 지역 주민 편익 증진에 적극 기여 - 시청에서는 참여교에 보조금 지원 - 학교장은 학교 시설 개방에 적극 협력	- 교당 200만원/연간	